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17 | March 2024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예규]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예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예규]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6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

- [예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 [예규] 미국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 인정 여부

소득세법

9

- [예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 [예규]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법

10

- [예규]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Contents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 [판례]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예규]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지방세법

15

- [판례]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자승)

법인세법

[예규]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사전-2022-법규법인-1154, 2024. 1. 9.

내국법인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코멘트]

- 최근 기재부는 “내국법인이 기부채납 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 1. 2.).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위 기재부 예규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도시점에 전액 인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예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2024. 1. 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코멘트]

- 과거 기재부는 법인이 회사채 등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 출자전환의무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이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와 같으므로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05. 2. 7.).
- 한편, 조세심판원은 채무의 출자전환은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 인바, 채무의 출자전환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 제4호의 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를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3전3688, 2015. 3. 18.).

[예규]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 2. 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코멘트]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쟁점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거 국세청은 “공사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 대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해당 자산을 시가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당해 공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나(서면-2015-법인-2115, 2016. 1. 13.), 대상예규는 이를 변경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 1. 2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코멘트]

- 조특법 제12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인수법인이 주식취득요건 등 각 호의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인수법인)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구주(기존주주로부터 12% 매입)와 신주(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3% 취득)를 같은 날 취득하여 피인수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주식취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취득한 주식등'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대상예규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입법취지(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이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를 고려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범위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은 제외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서면-2023-법규국조-1631, 2024. 1. 19.

A법인(합병법인)과 B법인(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을 한 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두 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의 투자금액(납입자본금)의 합계액 중 B법인이 감면결정을 받아 납입한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을 각 투자금액(증자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출할 때, 합병 전 각 법인이 납입한 자본금 합계액(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합병 후 자본금 총액(합병비율에 따라 재산정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반면, 국세청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법인에 해당한 사안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7. 3. 19. 등).

[예규] 미국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인정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458, 2024. 2. 14.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쟁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 중 일부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쟁점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코멘트]

- 과거에도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회신한 바 있음(서면-2023-국제세원-0866, 2023. 5. 31.).
- 한편, 최근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한·중조세조약 상으로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소득세법

[예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코멘트]

- 소득세법 제155조의 4(“쟁점규정”)는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임(2014년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참조).
- 대상예규는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할 때(갑설)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을설) 중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임.

[예규]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2024. 3. 14.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코멘트]

-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2021. 9. 13.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주식에 대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함.
- 동일한 주식종목에 대하여 소수단위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의 1주 이상이 되면 증권사 직권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온주단위 매매분으로 전환이 가능한바, 대상예규의 질의자는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을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예규]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 2. 21.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코멘트]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같은 호 라목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0. 1. 29. 「학교급식법」 개정 시 제4조 제1호는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였음.
- 결국,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쟁점용역”)은 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다목이나 라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예규는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다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24. 2. 23.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코멘트]

- 과거 국세청은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A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법인")과 A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부담하고 개발 결과물을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A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A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A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B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A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부가가치세과-970, 2012. 9. 24.).
- 결국, 대상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사안] A사(“이 사건 회사”)는 2007. 6. 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甲, 乙, 丙(“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각 유상증자 및 매매로 취득하였음.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2017. 6. 14.부터 2017. 8.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과 관련한 증여부분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丁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로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 2를 신설하여 재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 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 5)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나아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 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81조의 5 제2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81조의 5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종전의 제81조의 3이 제81조의 4로 이동하고 제81조의 5가 제81조의 6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기법”) 제81조의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이르게 되었음.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기법 제81조의 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이 포함된 제7장의 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함.

[판단] 증여세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기법 제81조의 6 제4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
 _계속_더라도, 그러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의 다른 호에서 정한 상대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함.

[코멘트]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은,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 국기법 제81조의 6 제3항 각 호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증여세와 같은 부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기법 제81조의 6 제3항 각 호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그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임.

[예규]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216, 2024. 2. 21.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를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배당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코멘트]

- 회계기준원은 잔여재산분배금 회계처리에 따르면,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는 100% 유상감자와 그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의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GKQA01-069, 2001. 4. 26.).

지방세법

[판례]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자 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사안] A사가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1. 28.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A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A사는 신탁회사인 원고와 2019. 2. 14.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함.

[판단]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7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 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2010년 지방세법”)은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던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고, 이러한 세목 체계는 구 지방세법 및 현행 지방세법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신탁재산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2장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점, 2010년 지방세법에서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전 지방세법 제128조가 삭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종전과 달리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와 같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및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코멘트]

- 1심(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구합20598 판결)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등기를 마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공부상 명의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누22470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함.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주정연

S.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